
토론내용

사회자

양 승 목 (언론중재위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패널토론자

박 정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 석 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 준 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 혜 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토론내용

○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늘 발제자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발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중재위원으로 일하며 얻은 실무적 관점을 토대로 질문을 드려 볼까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는 1981년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근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한 자기방어권을 강조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성상 ‘제척기간’을 상당히 단기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중재 신청기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비교하여 단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종이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인터넷 상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색될 수 있어 그 피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사에 대한 구별 없이 단기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척기간으로는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그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기사가 존재하는 한 피해자가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정중재 등 구제수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고 오로지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도 삭제청구보다는 기존의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오히려 피해구제에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기사 전문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사의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제한적 부분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당초 기사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떤 정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함께 알리고 싶어 하는 피해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원하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을 가능하게 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정정보도청구 등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에 발맞추어 정정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안마다 각양각색의 원인과 경위가 있어 일률적으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연구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오프라인 기사와 달리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 역시 예상 외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해당 기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링크 또는 복제글의 존재 여부 및 그 유포의 정도 역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라도 손해배상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중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가 정정이나 삭제가 되었으나 조정 전에 이미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으로 일하면서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오른 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기사를 전과한 행위자가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는 기사가 아닌 일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록 조정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정 절차를 통해서 중국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상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쉽게, 절차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중국적인 피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법제 하에서 정부 당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포털 등 각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가 피해구제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삭제청구 안에 정정보도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추후보도청구는 갱신청구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삭제영역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공지해야겠다고 하면 스스로 삭제청구권 대신 갱신청구권의 형태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제청구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고 갱신청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주신 현행 법제에서 정부당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각 관계기관과 언론, 포털 등이 어떤 노력을 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손해배상액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수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높아진다면 사법적 판결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데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기사를 관리하는 기구들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이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저작권위원회가 차단을 하지 못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거쳐 불법 인터넷 저작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강화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협조 회의를 진행하여 인터넷 공간의 피해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현행 법제 안에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제가 처음 기자가 된 1991년과 지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터넷과 강력한 검색엔진이 등장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시설이나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공간적 경계가 무너져 글이 오래 유지되고 널리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언론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업 기자로 언론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법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업 기자들도 언론법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과 같은 법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복잡한 우리 언론법제에 또 새로운 규제의 둘을 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우리가 더 성숙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게 놓아두는 것 자체가 언론의 사명에 어긋나는 행위

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잘못된 기사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적 감수성,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 인식과 함께 가야 올바른 제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적절한 기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을 살펴보면 상당성을 인정받아 면책이 된 기사의 경우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보가 되어버린 기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내지 ‘부적절하게 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류상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실에 근거해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는데 추후에 허위의 사실로 변화한 기사를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이를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곧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의 보호의무나 언론의 진실의무에 비추어 이에 합당하게 기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셨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잘못된 사실이 계속 보도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기사가 문책을 받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보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수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링크나 검색결과 등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방식을 살펴봐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여 그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이 어떠한 이유로든 삭제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무작정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갱신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이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언론사 스스로 전문을 취소하거나 표

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상의 일부이고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면 1보, 2보, 3보의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그 기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면 더 완벽한 기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삭제되어야 할 잘못된 정보로 인지되는 것도 먼 훗날에는 진실이 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완벽하지 않은 잠정적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증책임과 제척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갱신이나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도 기사의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기사에 대한 잠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갱신이나 수정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에게 어느 정도의 입증을 요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언론사의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기사에 대한 입증수단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해당 언론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링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링크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중요한 정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링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삭제청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부적절한 기사라는 용어에 대한 지적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 ‘부적절하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잊혀질 권리 판결에서 정보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는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잊혀질 권리가 논의선상에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라는 의미를 담고자 ‘부적절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삭제청구권을 정리를 할 때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입법과정이 진행된다면 이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는 당시에는 진실인줄 알았으나 후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에는 삭제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언론의 역사성이나 입증책임, 제척기간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갱신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우선 인터넷 기사에 관한 피해구제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개최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수가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수를 넘어선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 기사를 둘러싼 보도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도에 관한 사후 구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감이 있지만 사례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체적 기사를 제시하기 보다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판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목한 보도는 당시 행사의 사회자가 이미 환풍구와 관련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자들이 사자(死者)에 대한 외람된 표현을 사용하며 사자(死者)의 안전불감증 부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미 경고를 했다는 내용은 많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언론이 사회자를 직접 확인했는지, 최초 보도자는 누구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사회자가 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최초 보도는 KBS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KBS는 사회자를 익명처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겨레는 KBS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냈습니다. 한겨레는 사회자와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탈출하신 분만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를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의 보도는 거짓보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자 스스로가 환풍구 관련 안전조치 발언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한겨레의 보도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죽인 보도였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한겨레는 사과하는 정도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보도를 했던 타 매체는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패치와 동아닷컴 등의 미디어에서 보도된 연예인 노홍철 씨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도 중 노홍철 씨가 직접 코멘트를 한 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노홍철 씨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이슈가 터지면 검색어 장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언론이 계속해서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면 최초 보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기 어려워지고,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저는 기자의 책임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자 스스로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에만 사후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발제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언론이 아닌 포털이나 게시판에 게재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도적인 대처방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포털이나 커뮤니티, 1인 미디어, 블로그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사이기 때문에 언론법에 근거해 피해구제 방안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정보법 차원에서 부적절하거나 허위인 정보로 파악해 삭제를 요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께서 언론영역을 생산자 중심으로 하여 ‘언론’과 ‘정보’로 구분해 놓으신 것은 기계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언론의 기사를 정보법 차원의 단순 정보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권리 간의 충돌에 어떻게 접근할지 다소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또 저는 2005년 인터넷신문 법제화 과정 당시 현업에서 공청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9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신문에 대한 구성요건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일주일 단위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블로그는 신문법에서 제외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인터넷 언론환경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요건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인터넷 공간은 9년 전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달라진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바꾸어 갈 것인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잊혀질 권리나 정보갱신권의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즉각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해주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신문법에서 포털은 인터넷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개정 당시에도 포털이 발전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신문법 안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뉴미디어법을 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털 전체에 신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결국 포털의 뉴스매개 부분만 신문법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털의 뉴스매개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도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언론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포털은 단지 편집책임자와 편집기준을 바이라인 형식으로 명시하는 수준의 의무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털의 의무조항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게시물을 정보법 차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기준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늘 새로이 제시된 정보갱신권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정부, 포털, 그리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삭제청구나 갱신청구의 적용 방향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석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복잡한 언론법 영역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기존 언론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정보법을 인터넷 기사에 적용하는 법리적 해석은 기존에 잘 하지 않던 접근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터넷 기사도 분명 정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수한 유형의 정보라는 차이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정보법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를 정보법 영역에서 다루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법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언론법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정보법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정보법에 대한 논의가 언론기관을 빼놓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법리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언론법 영역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론법과 정보법 간의 학문적 교류가 진행된다면 인터넷 기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저는 다음카카오에서 포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십수 년간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포털 미디어의 공정성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고 연구자로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피해구제와 인터넷 게시글이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익했던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이다 보니 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방송 등 기존 매체보다 많다는 단순 수치를 근거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은 2009년 인터넷뉴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 이후 신청인들은 기

본적으로 신문, 방송에 대한 피해구제를 청구할 때 포털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청구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계약한 언론사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제휴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가 저희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 매체에 대한 신청과 동시에 저희 포털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하다 보니 겹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매우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글에 대해 간략한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은 언론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즉각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여깁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부에 언론매체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기준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1인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사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사와 정보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에 대한 절대적 신뢰도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블로거가 쓰면 못 믿을 정보이고 5,0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에서 쓴다면 보호해야 할 기사라고 분류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복제글이나 링크, 검색결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 정보에 대해 처리절차가 다른 것이 타당한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상에서 위법한 정보입니다. 이 위법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는 '임시조치'라는 강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명예훼손 침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공자가 직권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은 삭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일반인, 그러니까 포털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포털사업자는 주로 임시조치를 내리며, 이러한 임시조치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법, 정보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의 사례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결의 영향력이 큰 것은 결국 적법한 정보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시조치를 통해서 잊혀질 권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이루어진 불법 정보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임시조치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기만 하면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시조치 조항을 근거로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임시조치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페인의 곤잘레스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임시조치는 2012년 기준으로 23만 건이 내려졌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미 8월에 전년도의 수치를 돌파했고 12월까지의 약 34만 건의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다음카카오도 상당히 많은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 요청하기만 하면 이미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법률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링크와 복제글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들며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털은 이미 일반인이 요구하는 임시조치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회 고위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방안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해 임시조치가 활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신청인이 공인이라면 허위 사실인 경우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주지만 사실적시만으로는 게시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재설정했습니다. 물론 원본 기사가 삭제됐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정보의 대상자가 공인일지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갱신청구권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검토 없이 삭제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갱신청구권이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경우 기자도 있고 바이라인도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 게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포털 이용자가 갱신을 청구하려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접촉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발제문에서도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포털은 게시자와 접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털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전화번호 기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털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포털이 갱신청구를 게시자에게 전달할 유효한 수단이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게시판 실명제 위헌 판결과 이후 주민등록수집이 금지되는 등의 법적 논의에서 나온 것이기에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포털이 이용자의 갱신요청을 게시자에게 전달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펀딩 등 새로운 뉴스 미디어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혹은 언론사가 썼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썼는지를 기준으로 뉴스 미디어를 구분한 발제자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뉴스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가 아닌 것의 구분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는 미디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많이 등장하

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바로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디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버즈피드(Buzzfeed)’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명문 유력지보다 약 3배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하는 ‘업워드(Upworthy)’라는 매체가 800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몇 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즈피드를 비롯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신문법에 등록된 언론도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는 글은 기사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미디어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면 기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글을 쓰지도 않으며, 신문법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법적 상태는 블로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이미 과급력 있는 언론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등장하는 뉴스 미디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분류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희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이준희 수석부회장님께서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신문법의 등록제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신문 및 미디어에 대한 등록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두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또 신문법은 국내에서도 진흥법입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문법이기에 때문입니다. 신문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2009년 개정 때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포털에 대한 몇 가지 규제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편집책임자 공개 등의 몇 가지 규제 조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조항은 포털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포털은 기사와 기사가 아닌 것의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포털사업자는 ‘이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은 블로그입니다’라는 명확한 구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뉴스와 일반 정

보 간의 구별이 없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일보부터 뉴욕타임즈까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블로그 콘텐츠와 자사 기자 콘텐츠를 동일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사의 경우 이미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경우 이 규제 조항 때문에 사업개편에 크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나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 규제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문이나 기타 미디어 매체들은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환 (발제자,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1인 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사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와 기사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삭제청구나 갱신청구가 입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와 정보 간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을 분명히 해야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어디까지의 영역을 다루는지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어떠한 정보를 다루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정보로 인한 피해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이미 잊혀질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의 ‘임시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포털의 생각과 이용자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이용자들은 게시중단

이나 임시조치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원본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에 포털의 기사도 삭제된다고 하는데 이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갱신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포털이 게시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단이 없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한 포맷에 따라서 갱신청구의 내용을 해당 정보 밑에 첨부하는 방식이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갱신청구가 인정되었다면 이메일을 통해 게시자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게시글 밑에 적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집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적으로 1,000억짜리 소송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집행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피해구제 기관에 갔을 때 모두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피해구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임시조치에 대한 답변에 추가적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백 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자율규제와 신고, 이용자 삭제 요청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네이버와 다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다음카카오의 경우 5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삭제요청 처리 업무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이 넘어 포털이 내리는 임시조치는 정착되어 비교적 절차가 명확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터넷 공간의 피해구제에 대한 공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뉴스펀딩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 때 어떠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할까 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박정호 변호사님의 의견에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님께서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기사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링크나 복제물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뉴스 유통에서 종이신문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뉴스 소비의 30%에서 40%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매체나 언론사 제공의 뉴스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SNS와 더불어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류 역시 확장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메신저는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삭제하고 갱신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시장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삭제청구나 갱신청구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좀 더 연구하여 발제내용을 보완한다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인격권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효력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격권은 그 주체가 대세적인 권한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즉, 주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방해 및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격권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은 인격권의 주체가 사망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사가 허위라면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인격권의 대세적인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격권 적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주체가 기사에 의해 방해 받은 경우 그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시킨다면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판례에 의한다면 삭제청구나 갱신청구를 위한 입법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양승목 (사회자, 언론중재위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근 잊혀질 권리가 삭제될 권리로 전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갱신권의 내용은 발제자께서 만들어내신, 지금까지 쓰이지 않은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국의 우수한 언론을 보면 이미 갱신되는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가 처음 기사를 올릴 때와 상황이 달라져 기존의 기사가 오보가 되어버리면 기자 스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바뀔 때는 물론이고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수정사항이 명시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사가 관리된다면 저희들이 오늘 걱정해왔던 문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갱신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입법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